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법원공무원규칙」의 개정으로 전문직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분야에 장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전문직위수당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별표 9 제11호 신설)
 - 4급 이상 공무원 : 월 100,000원 내지 월 450,000원
 - 5급 이하 공무원 : 월 70,000원 내지 월 400,000원

4.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근무기간	월 지급 상한액	
11. 전문 직 위 수 당	「법원공무원규칙」 제 51조의2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4급 이상	5급 이하
			1년 미만	100,000원	70,000원
			1년이상 2년미만	120,000원	90,000원
			2년이상 3년미만	180,000원	150,000원
			3년이상 4년미만	300,000원	250,000원
			4년 이상	450,000원	400,000원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932